

## 법인화 추진 사업

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
### 안건 4-1. 정관 개정의 건

1) 주문사항: 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을 정회원, 후원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, “정관 제2장 회원”을 아래의 개정사항, 신설사항과 같이 변경한다.

개정사항: 제2장 회원 제5조(회원의 구분)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는 정회원, 명예회원, 후원회원이 있다.

신설사항: 제2장 회원 제9조(회비) ④ 후원회원은 매달 5,000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

② 단체 정회원의 회비 기준액을 명기하지 않고, 단체 정회원의 회비 액수를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아래의 개정사항과 같이 변경한다.

개정사항: 제2장 회원 제9조(회비) ③ 단체 정회원은 이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매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

2) 취지: 후원회원 자격을 신설함으로써,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여러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 단체 정회원의 회비 기준액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회원 가입을 더 쉽게 한다.

### 3) 참고: 현행 정관과 비교

현행	변경
<p>제2장 회 원</p> <p>제5조(회원의 구분)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다.</p> <p>제6조(회원의 자격) 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</p> <p>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단체의 회원 가입은 전국조직(산하 지역조직이 있을 경우)과 의제조직일 경우에 가능하다. 단, 정당</p>	<p>제2장 회 원</p> <p>제5조(회원의 구분)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는 정회원, 명예회원, 후원회원이 있다.</p> <p>제6조(회원의 자격) 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</p> <p>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단체의 회원 가입은 전국조직(산하 지역조직이 있을 경우)과 의제조직일 경우에 가능하다. 단, 정당</p>

<p>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, 정당의 부설 연구소는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정회원은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</p> <p>②회원은 네트워크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</li> <li>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</li> <li>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</li> </ol> <p>제9조(회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명예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</li> <li>② 개인 정회원은 매월 5,000원 이상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이사회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③ 단체 정회원은 매월 100,000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단, 단체 정회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, 정당의 부설 연구소는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정회원은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</p> <p>②회원은 네트워크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</li> <li>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</li> <li>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</li> </ol> <p>제9조(회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명예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</li> <li>② 개인 정회원은 매월 5,000원 이상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이사회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③ 단체 정회원은 이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매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</li> <li>④ 후원회원은 매달 5,000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</li> </ol>
--	--

#### 안건 4-2. 운영재산의 기본재산 전환의 건

1) 주문사항: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재산 중 9,000,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.

2) 참고: 현금 및 금융재산 현황(2017년 12월 31일 현재)

운영재산: 12,964,621원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본재산: 41,862,080원

일반계정	통장잔고	12,912,782
	현금	8,930
	합계	12,921,712
기금-적립금 계정	법인설립기금	32,000,000
	명예회비기금	5,300,000
	기본소득대회기금	4,562,080
	세후 예금이자	42,909
	합계	41,904,989

#### 안건 4-3. 기타 법인화에 필요한 조치의 건

주문사항: 법인 설립 및 허가신청을 위한 기타 요건과 절차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마련, 추진한다.